

	산업기술연구소운영위원회 운영규칙		규정번호	6-2-2
			제정일자	1996.06.01
	개정일자	2011.05.13		
	개정번호	Ver.6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연구소의 연간 예산·결산의 심의
2.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의 심의
3. 교내 연구과제의 선정
4. 연구소 규칙 및 연구소 관리 지침의 개폐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교내 논문집과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7.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8. 논문의 투고 요령에 관한 사항
9. 기타 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장, 연구부장과 전공 학과별 교수 1인(학부의 경우는 2인 이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연구소 부장 또는 위원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보안) 위원회 위원은 업무에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 타인에 유출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제7조(시행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지침에 정한다.

부 칙

- (1) (개정) 이 규칙 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